

## 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」 중 일부개정

### 1. 개정 이유

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」의 일몰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고시 유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 내용

가.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6.7.1.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설정함.  
(제11조)

◎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-10호

「비료관리법」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의한 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6년 3월 7일

농촌진흥청장

### 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」 중 일부개정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11조(재검토기한)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[「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」 중 일부개정]

현행	개정
<신 설>	제11조(재검토기한)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